

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결 정

사 건 2022타채,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
채 권 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
대부 주식회사
(아산시)

정본입니다.



송달장소 :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,
H타워 301호 법무사 전종필 사무소
(만성동 1366-9)
대표자 사내이사
송달영수인 : 전종필

채 무 자 홍 : ()
강원 양구군

제 3 채 무 자 대한민국
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11 (만성동,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)
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
(소관 : 전주지방법원 공탁관)

주 문

1.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카단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 중 금 25,000,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, 나머지 금 35,000,000원을 압류한다.
2.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3.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4. 채권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.

청구금액

금 60,000,000원(청구채권내역은 별지기재와 같음)

이 유

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 약정금 사건
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
과 같이 결정한다.

2022. 11. .



전 주 지 방 법 원

결 정

사 건 2023카담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

대위신청인
(담보제공자의
추심채권자)

망 권 상속인 홍 의 승계인
아산시

대부 주식회사

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, 301호(만성동)

(송달영수인:법무사 전종필)

사내이사

담보권리자

박 ()

서울특별시 송파구

주 문

이 법원 2020카정1 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20. 4. 1. 전주
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20년 금 제 1호로 공탁한 금25,000,000원의 담보는 이를 취
소한다.

이 유

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이 이 법원이 정한 최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으므로
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, 제1항, 제2항에 의하여 주

※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
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(번호)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,변
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